

담당	책임자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뒷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사항

신탁계약일	계약명	계좌번호
구분		내용
제2조	신탁금액	
제3조	신탁기간	(신탁기간 만료시 재산교부 가능일 :)
제8조	투자자문업자의 지정	
제16조	신탁기본보수	신탁원본평균잔액 x 연 ()% x 신탁기간(일수) / 365
제17조	신탁수익보수	④ 기준지표 : () ⑥ 수익보수 가액 1. 신탁수익률이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고, 연 ()%의 신탁수익률보다 큰 경우 $\text{수익보수} = \text{신탁원본} \times (\text{신탁수익률} - \text{기준지표수익률}) \times ()\%$ 2. 신탁수익률이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연 ()%의 신탁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3. 신탁수익에서 수익보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신탁수익률(이하 본 호에서는 "순수익률"이라 함)이 연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수익률이 연 ()%를 초과하도록 수익보수 가액을 계산한다.
제18조	이익의 계산 및 지급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5. 기타 ()
제20조	중도해지	신탁계약일로부터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
제27조	통보, 확인방법	① 통보, 확인방법 :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전화 ② 통 보 방 법 :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제28조	특약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신탁자금 운용방법 (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위탁자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대리인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수탁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문자통보안내) 신청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알리미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신청합니다. - 신탁만기도래, 운용자산 만기도래, 추가입금액, 기타 주요 통지사항 등	고객명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	---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이익중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 으로 한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신탁기간 만료 시 재산교부 가능일: 년 월 일)

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 최초 20일 전까지 신탁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시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운용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전략의 수립
 2.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구성
 3.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종목의 결정
 4.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의 결정
 5.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의 운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운용능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제8조에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최종적인 투자판단 과정을 거쳐 신탁재산을 운용하므로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 내용은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
- ⑥ 주식에 운용할 경우 등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 ⑦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⑧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재무상태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신탁재산 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재무상태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 체결 시
 2. 매분기 1회 이상
 3. 수탁자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무상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변경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위탁자가 재무상태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이 운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대입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입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입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입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7항의 대입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자문회사의 지정)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5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다.

1. 투자자문회사명 (자필기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수탁자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 (투자자문수수료)

수탁자는 투자자문회사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운용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다음 말 말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으로 위탁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법적절차)

신탁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원본과 이의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의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동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6조 (신탁기본보수)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함)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text{기본보수} = \text{신탁원본평균잔액} \times \text{연} (\quad) \% \times \text{신탁기간(일수)} / 365$$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반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본보수 수령일 또는 청구일 전일까지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를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신탁수익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원본은 최초 신규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1. 신탁기간 만료일 1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1영업일
- ③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학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 ④ 제6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다.
- 기준지표: ()
- ⑤ 이하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까지 지급한 신탁이익
 - 다.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2.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일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종료시 기준지표 대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종료시 기준지표의 상승 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⑥ 수익보수 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신탁수익률이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고, 연 ()%의 신탁수익률보다 큰 경우

$$\text{수익보수} = \text{신탁원본} \times (\text{신탁수익률} - \text{기준지표수익률}) \times (\quad) \%$$

2. 신탁수익률이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연 ()%의 신탁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3. 신탁수익에서 수익보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신탁수익률(이하 본 조에서 "순수익률"이라 함)이 연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수익률이 연 ()%를 초과하도록 수익보수 가액을 계산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5. 기타 ()

② 신탁이익의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 영업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20조 (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관련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와 제17조에서 정한 수익보수 및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input type="text"/>)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input type="text"/>)%
- 신탁계약일로부터 (<input type="text"/>) 이상 (<input type="text"/>)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input type="text"/>)%
- 신탁계약일로부터 (<input type="text"/>) 이상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input type="text"/>)%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 ③ 제29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하는 경우
- ④ 제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21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제16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1/3의 비율로 계산한다.
-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⑦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⑧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2조 (양도 및 담보제공)

-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위탁자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 ## 제23조 (일부해지)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제24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사고신고 등)

-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성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이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 (인감신고)

-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통보, 확인방법)

- ① 제3조(신탁기간)제3항,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제4항, 제6조(재무상태 등의 확인)제3항,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지정)제3항에 따른 통보, 확인은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통보, 확인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전화 위탁자: _____ (인/서명)
-----------	---

- ② 제10조(운용내역 통보 등)제1항, 제24조(신탁계약의 변경 등)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통보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위탁자: _____ (인/서명)
-------	---

제28조 (특약)

-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제31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주 소: _____
	생년월일/사업자번호: _____
	성 명: _____ (인/서명)

(법정)대리인	주 소: _____
	생년월일/사업자번호: _____
	성 명: _____ (인/서명)

수탁자	주 소: _____
	성 명: (주)하나은행 _____ 지점
	부 장: _____ (인/서명)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내지 25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	10. 외화증권	19. 공사채형수익증권
2. 콜론	11. 보증어음	20. 주식형 수익증권
3. 환매조건부채권	12. 자유금리기업어음*	21. 기타의 유가증권
4. 국채	13. 표지어음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5. 통화안정증권	14. 증개어음	23. 증권지수의 선물거래
6. 기타 금융채	15. 발행어음	24. 증권인 옵션
7. 지방채	16. 양도성예금증서	25. 기타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8. 사채	17. 신용카드채권	
9. 주식	18. 개발신탁수익증권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주최회사 하나은행 _____ 지점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_____
- 계좌 번호: _____
- 운용지시 내용: 신탁자금 운용방법[별표1]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세부내용」란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자금 운용방법 (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위탁자	성 명: _____ (인/서명)	년 월 일
	주 소: _____	
(법정)대리인	성 명: _____ (인/서명)	
	주 소: _____	

